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	---	---	---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회계	1
가. 세입결산	1
(1) 총 괄	1
(2) 세입 주요내역	1
(3) 분 석	2
나. 세출결산	4
(1) 총 괄	4
(2) 이·전용 등	6
(3) 분 석	9
(4) 프로그램	17
 2. 재무결산	 19
가. 재정상태 분석	19
나. 재정운영 분석	21
다. 순자산변동 분석	22
 3. 성인지 결산	 23

Ⅱ. 검토의견

【총괄】

1. 인사제도 개선 및 휴직자 관리 필요 24

가. 개 요 24

나. 전반적인 인사 복무 관리 점검 및 개선 필요 25

다.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을 선관위공무원으로만 임명하는 관행 개선 필요 ...29

라. 선거철에 압박하여 급증하는 휴직자 문제 대책 마련 필요 35

2. 국회의원선거관리 등 선거관리 세부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 39

가. 개 요 39

나. 동일 목적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41

【세입결산】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47

가. 개 요 47

나.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 수납률 제고노력 지속 필요 48

다. 지방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에 대한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53

【세출결산】

1.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59

가. 개 요 59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60

2. 위탁선거관리(1131-306)	65
가. 개 요	65
나.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필요	67
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의무위탁에 관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반영한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	73
3.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79
가. 개 요	79
나. 유권자의 날 관련 하향식·일회성 행사 지양 및 법개정 검토 필요	80
4. 선거방송토론(1135-314250)	86
가. 개 요	86
나.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필요	87
5.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91
가. 개 요	91
나. 위원회기본경비예산의 부적정 집행 주의	92
6.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95
가. 개 요	95
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96
7. 국제교류협력(7132-345)	99
가. 개 요	99
나. 국외출장 내실화 필요	100

8. 위원회운영(7132-351) 107

가. 개 요 107

나. 위원수당 지급 관련 규정 정비 필요 108

문 의 처

02-6788-5332

02-6788-5343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1) 총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 6,300만원으로, 21억 8,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40.0%인 8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9,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합계	863	2,180	871	100.9	40.0	1,293
재산수입	33	36	37	112.1	102.8	-
경상이전수입	822	1,904	594	72.3	31.2	1,29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	29	29	362.5	100.0	-
관유물매각대	-	212	212	-	100.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세입 주요내역

- 2023회계연도 세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3,700만원,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경상이전수입” 5억 9,400만원, 잡수입인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00만원, 토지매각대인 “관유물매각대” 2억 1,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세입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과부족 (B-A)	세 부 내 역
합 계		863	2,180	871	8	
◦	재산수입	33	37	37	4	
	▪ 토지대여료	23	26	26	3	국유재산 허가 사용료
	▪ 기타관유물대여료	5	3	3	△2	임차 관사 등 허가 사용료
	▪ 기타재산이자수입	5	7	7	2	금융기관 예치이자액 등
◦	경상이전수입	822	1,904	594	△228	
	▪ 과 태 료	110	165	110	-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 변 상 금	2	3	3	1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위 약 금	-	5	5	5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 가 산 금	-	2	1	1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채납에 따른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710	1,729	476	△234	후보자 기탁금, 선거보전비용반환금 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	29	29	21	
	▪ 기타잡수익	8	29	29	21	폐기문서 등 불용품 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	212	212	212	
	▪ 토지매각대	-	212	212	212	청사신축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결산액은 8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66억 7,900만원 대비 87.0% 감소하였음. 이는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C/A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3년	863	2,180	871	101.0	40.0	1,293	16
2022년	4,035	8,099	6,679	165.5	82.5	1,347	74
증감율	△78.6	△73.1	△87.0	-	-	△4.0	△78.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3년도에는 세입예산액 8억 6,300만원의 101.0%인 8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초과하였음.

□ 한편,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징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1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에 미달하였고, 기타연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을 초과함.

[최근 5년간 세입예산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과부족 (C-A)	징수율 (C/A)
2019년	838	892	886	48	105.7
2020년	10,465	12,347	12,215	1,750	116.7
2021년	1,537	2,812	1,145	△392	74.5
2022년	4,035	8,099	6,679	2,644	165.5
2023년	863	2,180	871	8	101.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처럼 징수율 변동 차가 큰 데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실시 여부 및 후보자수 등에 따라 연도별 세입액 편차가 크고, 기탁금 국고귀속액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과태료는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나. 세출결산

(1) 총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4,067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 2,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068억 2,2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3%인 3,99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의 1.7%인 6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총계	839,892	406,700	406,700	406,822	399,967
<1100선거의공정한관리계>	565,466	116,896	116,896	116,896	113,247
<1131공직선거관리계>	405,658	49,477	49,477	49,477	47,964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285,954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3	3,800	3,800	3,567	2,932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31-302)	13,536	-	-	-	-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 예산	추경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5,350	1,394	1,394	1,627	1,597
• 재외선거관리(1131-305)	6,561	7,707	7,707	7,707	7,451
• 위탁선거관리(1131-306)	199	501	501	501	488
• 선거보전금(1131-307)	91,703	-	-	-	-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2,331	36,075	36,075	36,075	35,496
<1132정당발전지원계>	142,255	47,973	47,973	47,973	47,843
• 정당사무지원(1132-320)	240	239	239	239	214
• 정당보조금(1132-322)	142,015	47,734	47,734	47,734	47,629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계>	16,739	18,556	18,556	18,556	16,575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822	2,414	2,414	2,414	1,484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404	1,474	1,474	1,474	1,391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2,741	2,254	2,254	2,254	2,120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0,215	12,002	12,002	12,002	11,318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556	412	412	412	262
<1135선거관리지원계>	814	890	890	890	86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06	116	116	116	115
• 선거방송토론(1135-314)	459	474	474	474	460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49	300	300	300	290
<7100선거관리행정지원계>	274,427	289,804	289,804	289,926	286,721
<7101인건비계>	208,315	216,626	216,626	212,954	211,801
• 인건비(7101-150)	208,315	216,626	216,626	212,954	211,801
<7111기본경비계>	14,448	16,298	16,298	16,298	15,599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4,448	16,298	16,298	16,298	15,599
<7132기관운영지원계>	44,169	49,779	49,779	53,573	52,489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20	497	497	497	485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695	803	803	803	760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497	539	539	539	524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2,112	2,311	2,311	2,311	2,274
• 국제교류협력(7132-345)	1,082	1,045	1,045	1,045	963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39	180	180	180	177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1,438	1,545	1,545	1,545	1,519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2,699	13,957	13,957	16,614	16,483
• 위원회운영(7132-351)	1,721	2,257	2,257	2,257	2,219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1,944	2,106	2,106	2,106	2,036
• 청사관리(7132-354)	21,424	24,539	24,539	25,676	25,049
<7136선거행정정보화계>	7,260	6,841	6,841	6,841	6,768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482	568	568	568	555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778	6,273	6,273	6,273	6,213
<7137예비금계>	235	260	260	260	64
• 예비금(7137-430)	235	260	260	260	6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전용 등

(가) 이·전용

☐ 2023회계연도 이·전용액은 없음.

☐ 2023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9%인 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전용액 769억 6,500만원 대비 95.2% 감소하였음. 주요 내역은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비 부족액 26억 5,7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0억 1,500만원,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부족액 1백만원임.

[2023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전용(C)	C/A
합 계	406,700	406,822	3,673	0.9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116,896	116,896	1	0.00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89,804	289,926	3,672	1.2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회계연도 이·전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	4,384	△4,384	순감
전 용	3,673	76,965	△73,292	△95.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이 월

-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12월 카드사용분에 대한 대금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금임.

[2023회계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월액(C)	C/A
합 계	116,896	116,896	1	0.00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116,896	116,896	1	0.00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회계연도 이월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1	122	△121	△99.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불 용

-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 수준인 68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306억 6,500만원 대비 77.6% 감소하였음.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15억 1,300만원, 정당발전지원 1억 3,0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9억 8,100만원, 선거관리지원 2,500만원, 인건비 11억 5,300만원, 기본경비 6억 9,900만원, 기관운영지원 10억 8,4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7,300만원, 예비금 1억 9,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불용액(C)	C/A
합 계	406,700	406,822	6,855	1.7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116,896	116,896	3,649	3.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89,804	289,926	3,205	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회계연도 불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6,855	30,665	△23,810	△77.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예비금

- 2023회계연도 예비금 예산액은 2억 6,000만원으로, 6,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용내역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비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재해보상금임.

[2023회계연도 예비금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금	260	64	-	1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가) 세출결산 전반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4,06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2,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68억 2,200만원임. 이 중 98.3%인 3,99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0.001%인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7%인 68억 5,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 이월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D)		불용액(E)	
					금액	(C/A)	(C/B)	금액	(D/B)	금액	(E/B)
406,700	122	-	±3,673	406,822	399,967	98.3	98.3	1	0.001	6,855	1.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국단위 공직선거 미실시에 따라 선거관리 비용 등 주요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공직선거관리 479억 6,400만원, 정당발전지원 478억 4,3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65억 7,500만원, 선거관리지원 8억 6,500만원, 인건비 2,118억 100만원, 기본경비 155억 9,900만원, 기관운영지원 524억 8,9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67억 6,800만원, 예비금 6,400만원임.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금액	(C/A)	(C/B)		
2019년	343,572	348,037	328,719	95.7	94.4	166	19,152
2020년	725,084	742,820	710,729	98.0	95.7	33	32,059
2021년	385,228	385,261	359,938	93.4	93.4	64	25,259
2022년	870,615	870,679	839,892	96.5	96.5	122	30,665
2023년	406,700	406,822	399,967	98.3	98.3	1	6,85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52.4% 감소한 3,999억 6,700만원으로 이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 공직선거 미실시로 선거관리경비 및 선거보조금 등 세출예산액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액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둘째, 이용액은 전년대비 100.0% 감소하였으며, 전용액은 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2% 감소하였음.

(나) 이 · 전용

☐ 2023회계연도 이용액은 없음

☐ 전용액은 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전용액 769억 6,500만원 대비 95.2% 감소하였음. 전용내역은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비 부족액 26억 5,7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0억 1,500만원,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부족액 1백만원임.

[2023회계연도 이 ·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	4,384	△4,384	순감
전 용	3,673	76,965	△73,292	△95.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전용액의 비율을 보면 202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 미만이며, 2022년도 이·전용액 증가 사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등 부족,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등 부족,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에 따른 지급 재원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343,572	725,084	385,228	870,615	406,700
이·전용액	687	7,082	257	81,349	3,673
예산액 대비 이·전용액 비율	0.2	0.98	0.07	9.3	0.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전용 사유	이·전용액
2019년	계	687
	▪ 각급 위원회 공공요금 부족	390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 부족	237
	▪ 사회복지요원 여비 부족	23
	▪ 행정지원인력 고용부담금 부족	23
	▪ 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연구용역비 부족	1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경비 부족	5
2020년	계	7,082
	▪ 코로나19 대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물품 구입	5,000
	▪ 공정선거지원단 고용부담금 부족	84
	▪ 선거공보 발송 등 우편요금 부족	1,915
	▪ 사회복지요원 여비 부족	52
	▪ 대체청사 담장붕괴에 따른 차량피해 손실보상금 소요	20
	▪ 선거전용통신망 사업비 분석 용역 관련 부족	11
2021년	계	257
	▪ 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낙상사고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1

연 도	이 · 전용 사유	이 · 전용액
	▪ 공공요금 부족	207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부족	11
	▪ 유권자의식조사 연구용역비 부족액	11
	▪ 사회복지무요원 여비 부족액	11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 실비	7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인식개선프로그램 개발비 부족	6
	▪ 국가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비 부족	3
2022년	계	81,349
	▪ 제20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관련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부족(이용 4,384, 전용 50,182)	54,566
	▪ 코로나19 예방·대책비용 전용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17,400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및 보전금 부족	4,940
	▪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재원 부족	4,400
	▪ 유상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28
	▪ 기타직보수 부족	15
2023년	계	3,673
	▪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 비용	2,657
	▪ 4분기 기관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1,015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비용	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이 월

□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하였음.

[2023년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1	122	△121	△99.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의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0.05%, 2020년도에는 0.004%, 2021년도에는 0.06%, 2022년도에는 0.01% 2023년도에는 0.001%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이월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 산 액	343,572	725,084	385,228	870,615	406,700
이 월 액	166	33	64	122	1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	0.05	0.004	0.06	0.01	0.00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월사유	이월액
2019년	계	166
	▪ 항온항습기 구매설치 계약지연	166
2020년	계	33
	▪ 선거물품 집중보관용역 대금 미지급금	26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유예금	7
2021년	계	64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선거장비 지원센터 운반장비(지게차 및 핸드파레트) 납품 지연에 따른 대금 미지급금	64
2022년	계	12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 등 납품 지연에 따라 발생한 공기연장에 대한 미지급금	122
2023년	계	1
	▪ 12월 카드사용분 대금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금	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불 용

- ☐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68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306억 6,500만원 대비 77.6% 감소하였음. 불용내역은 주로 집행잔액이며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15억 1,300만원, 정당발전지원 1억

3,0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9억 8,100만원, 선거관리지원
2,500만원, 인건비 11억 5,300만원, 기본경비 6억 9,900만원, 기관운영지
원 10억 8,4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7,300만원, 예비금 1억 9,600만원
임.

[2023년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6,855	30,665	△23,810	△77.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19년도 이후 5.0% 내외의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22년도 이후는 불용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 산 액	343,572	725,084	385,228	870,615	406,700
불 용 액	19,152	32,059	25,259	30,665	6,855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	5.6	4.4	6.6	3.5	1.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불용액 및 불용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불용사유	불용액
2018년	계	28,552
	▪ 인건비 집행잔액	19,553
	▪ ODA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277
	▪ 정당보조금 집행잔액	758
	▪ 재보궐선거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596
	▪ 267개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6,368
2019년	계	19,152
	▪ 인건비 집행잔액	16,936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353
	▪ 재외선거관리 집행잔액	227
	▪ 재보궐선거관리 집행잔액	22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411
2020년	계	32,059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2,240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12,046
	▪ 인건비 집행잔액	4,035
	▪ 재외선거관리 집행잔액	2,233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1,505
2021년	계	25,259
	▪ 인건비 집행잔액	13,694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규모 축소·미실시	7,61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3,950
2022년	계	30,665
	▪ 정당보조금 집행잔액	5,624
	▪ 인건비 집행잔액	3,706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2,27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9,060
	계	6,855
2023년	▪ 인건비 집행잔액	1,153
	▪ 기타 269개 위원회 집행잔액	5,70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프로그램

(가)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1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은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및 “선거관리행정지원(7100)”의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프로그램은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아래 표와 같이 i) 공직선거관리(1131), ii) 정당발전지원(1132), iii)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1133), iv) 선거관리지원(1135)의 4개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1공직선거관리계>	405,658	49,477	49,477	49,477	47,964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285,954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3	3,800	3,800	3,567	2,932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31-302)	13,536	-	-	-	-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5,350	1,394	1,394	1,627	1,597
• 재외선거관리(1131-305)	6,561	7,707	7,707	7,707	7,451
• 위탁선거관리(1131-306)	199	501	501	501	488
• 선거보전금(1131-307)	91,703	-	-	-	-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2,331	36,075	36,075	36,075	35,496
<1132정당발전지원계>	142,255	47,973	47,973	47,973	47,843
• 정당사무지원(1132-320)	240	239	239	239	214
• 정당보조금(1132-322)	142,015	47,734	47,734	47,734	47,629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계>	16,739	18,556	18,556	18,556	16,575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822	2,414	2,414	2,414	1,484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404	1,474	1,474	1,474	1,391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2,741	2,254	2,254	2,254	2,120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0,215	12,002	12,002	12,002	11,318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556	412	412	412	262
<1135선거관리지원계>	814	890	890	890	86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06	116	116	116	115
• 선거방송토론(1135-314)	459	474	474	474	460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49	300	300	300	29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7100)

□ “선거관리행정지원(7100)” 프로그램은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경비 지원,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민주적 선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아래 표와 같이, i) 인건비(7101), ii) 기본경비(7111), iii) 기관 운영지원(7132), iv) 선거행정정보화(7136), v) 예비금(7137)의 5개의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7101인건비계>	208,315	216,626	216,626	212,954	211,801
• 인건비(7101-150)	208,315	216,626	216,626	212,954	211,801
<7111기본경비계>	14,448	16,298	16,298	16,298	15,599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4,448	16,298	16,298	16,298	15,599
<7132기관운영지원계>	44,169	49,779	49,779	53,573	52,489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20	497	497	497	485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695	803	803	803	760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497	539	539	539	524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2,112	2,311	2,311	2,311	2,274
• 국제교류협력(7132-345)	1,082	1,045	1,045	1,045	963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39	180	180	180	177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1,438	1,545	1,545	1,545	1,519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2,699	13,957	13,957	16,614	16,483
• 위원회운영(7132-351)	1,721	2,257	2,257	2,257	2,219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1,944	2,106	2,106	2,106	2,036
• 청사관리(7132-354)	21,424	24,539	24,539	25,676	25,049
<7136선거행정정보화계>	7,260	6,841	6,841	6,841	6,768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482	568	568	568	555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778	6,273	6,273	6,273	6,213
<7137예비금계>	235	260	260	260	64
• 예비금(7137-430)	235	260	260	260	6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자산은 7,524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음. 유동 자산은 32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7%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급보증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투자자산은 전년대비 1,200만원 80.0%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투자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일반유형자산은 7,280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건물의 취득 및 정부내자산수증, 구축물·기계장치·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무형자산은 93억 3,6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이는 외부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시스템구축 등 내부개발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기타비유동자산은 118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2.3%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기지급보증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는 95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2% 감소하였음. 유동부채는 34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이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장기차입부채는 60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6% 감소하였으며, 이 역시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순자산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7,429억 5,100만원이며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재정상태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	752,452	714,543	37,909	5.3
부 채	9,501	13,048	△3,547	△27.2
순자산	742,951	701,495	41,456	5.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4,142억 6,900만원이며 전년대비 52.8% 감소함. 프로그램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으로 888억 5,1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84.5%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단위 공직선거 미 실시에 따른 경비의 감소에 기인함. 관리운영비는 3,263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비 증가에 따른 것임. 비배분수익은 10억원으로 전년대비 84.9%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타수익 감소에 기인한 것임.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88,851	572,098	△483,247	△84.5
II. 관리운영비	326,399	312,323	14,076	4.5
III. 비배분비용	18	23	△5	△21.7
IV. 비배분수익	1,000	6,616	△5,616	△84.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14,269	877,828	△463,559	△52.8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14,269	877,828	△463,559	△52.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기말순자산액 7,429억 5,100만원은 기초순자산액 7,014억 9,5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인 4,142억 6,900만원을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 이전액 4,562억 500만원과 조정항목 △4억 800만원을 더한 값임.

[2023회계연도 순자산변동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701,495	681,212	20,283	3.0
II. 재정운영결과	414,269	877,828	△463,559	△52.8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456,205	889,526	△433,321	△48.7
IV. 조정항목	△480	8,584	△9,064	△105.6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742,951	701,495	41,456	5.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순자산변동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2023년 주요순자산 변동내역 및 금액]

- 기초순자산	701,495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414,269백만원
- 재원의 조달	459,430백만원
• 국고수입	399,968백만원
• 제재금수익	123백만원
• 기타비교환수익	279백만원
• 무상이전수입	7,451백만원
• 기타재원조달	51,610백만원
- 재원의 이전	3,225백만원
• 국고이전지출	871백만원
• 무상이전지출	2,354백만원
- 조정항목	△480백만원
• 자산재평가이익	△480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성인지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인지 사업은 공공부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로 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1억 6,800만원이고 집행액은 6,800만원으로 집행률은 40.4%임.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인지 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2년	'23년 집행액(c)			전년 대비 증감 (b-c)	전년 대비 증감률 (b-c/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 소계(A)	43	168	68	40.4	25	57.9
일반회계	(1)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여성 정치참여 교육	43	168	68	40.4	25	57.9
	특별회계 소계(B)	-	-	-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	-	-			
	직접목적사업 소계	43	168	68	40.4	25	57.9
	합 계(A+B)	43	168	68	40.4	25	57.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I. 검토의견

【총 괄】

1. 인사제도 개선 및 휴직자 관리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인사 복무 관리 점검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직에 내부직원만 임명하면서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철에 임박하여 휴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계획 수립을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은 2024년 7월 기준 총 2,982명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은 372명,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은 640명(시·도별 22명~5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은 1,970명(구·시·군별 5명~1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

(2024. 7. 1. 현재)

구 분	인 원	합 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72명(소속기관 22명 포함)	2,982명
시·도선거관리위원회	640명(시·도별 22명~55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1,970명(구·시·군별 5명~13명)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전반적인 인사 복무 관리 점검 및 개선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체 전수조사 결과 채용 비리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바 있음.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채용·인사·복무 등 조직 전반에 걸쳐 관계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음이 밝혀졌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전수조사에서 수사요청 대상자가 4명¹⁾이었음에 반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27명이 수사요청 대상자로 드러났음.²⁾
- 또한, 감사원은 채용 외의 인사 분야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및 직원의 복무기강 해이 실태를 확인하여 내부검토 중이며, 신속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중심(외부 6명, 내부 1명)

1)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전수조사 결과 前사무총장, 차장, 제주 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 4명에 대해 수사요청하고, 징계의결 요구 4명, 주의처분 2분에 그침.

2) 감사원(2024.4.29.),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https://www.bai.go.kr/bai/board/base/detail?brdId=BAK_0007&postNo=243)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였고,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였음. 또한, 그간 국회 등에 허위 답변·자료 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점검을 증거인멸(자료파기, 말 맞추기 등)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 신속한 수사착수 필요성이 높아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총 27명(前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하였음.

의 감사위원회를 설치(2024.1.1.)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2024.1.1.)하여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까지 조직·인사개선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개선방안과 인사규정 정비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선관위 조직·인사개선 추진기구 현황>

- (추진시기) 2024.5.29. ~ 12월
- (추진기구) 추진단장(사무차장) 지휘 하에 2개팀
(조직개편팀 11명, 인사규정정비팀 4명 운영)
- (주요내용)
 - 각급 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 조직 연구
 - 2023년 조직개편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규정 정비안 마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2024.7.11.) 자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복무기강 해이 실태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설립³⁾ 60여 년동안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으며, 자체 감사만 고집한 결과 조직 운영과 인사 시스템 전반에 걸쳐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이 뿌리박힌 결과라는 지적이 있음.⁴⁾

□ 감사원의 감사는 크게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나뉘는데,⁵⁾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범위에

3) 감사원은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음.

4) 법률저널(2024.5.2.), “채용 비리 소굴 같은 선관위, 해체 수준 강력대책 시급”

5)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계검사 외에 직무 감찰은 거부해오다가,⁶⁾ 자녀 특혜채용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결과 조직·인사 운영 전반에 걸친 복무기강 해이 실태가 밝혀진 것임.

□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며, 감사원의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려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명시⁸⁾하듯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헌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6)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97조상 행정기관만 직무감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제3항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만 명시해놓았음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감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함.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생략)

- 7) 의안번호 제2200540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 8)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

으로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선거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부분임.

□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올해 5월 실시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⁹⁾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37%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바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인사 복무 관리 점검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운동”이 2024년 5월 7-8일 이틀간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진행된 여론조사. 자료출처는 매일경제(2024.5.13.), “국민 10명 중 4명 선관위 투개표 신뢰하지 않는다”

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거관리공무원으로만 임명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두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정수는 9인으로 하면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¹⁰⁾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¹¹⁾」에 따라 1급 공무원(임기제)으로 대우받고 있는데,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¹²⁾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도록 하되,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¹³⁾

10)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 (이하 생략)

1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2(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는 관리관(임기제)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7명)과 감사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까지 총 19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12)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1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요건>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급(임기제) 공무원¹⁴⁾에 해당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7명)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만 지명하면서, 그 임기를 법정임기인 6년이 아닌 하위규칙¹⁵⁾을 통해 2년으로 축소·운영하며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르면 선관위의 1급 공무원 정원은 17명의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21명임.

15)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9조의2(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①법 제6조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할 때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때에는 지명기간은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중 다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새로이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때에도 전임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2년에 달할 때에 당연히 그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명기간이 만료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⑤ 삭제 <1999. 10. 20.>

⑥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현황>

(단위: 명)

구분(선관위 기구표 순)	상임위원	약력
서울특별시	김○○	- 광주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 - 제주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부산광역시	신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상임위원(관리관) - 대전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대구광역시	조○○	- 부산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강원선관위 선거과장
인천광역시	김○○	- 경남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 -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광주광역시	황○○	-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광주선관위 선거과장
대전광역시	김○○	- 광주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울산선관위 선거과장
울산광역시	김○○	- 광주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대구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세종특별자치시	김○○	- 대전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 - 경북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 - 경기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경기도	김○○	-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관리관) - 대전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강원특별자치도	옥○○	-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관리관) -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이사관)
충청북도	김○○	- 경기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 -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관리관)
충청남도	임○○	- 충남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중앙선관위 기획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김○○	- 경남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사무국장
전라남도	김○○	- 광주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중앙선관위 법제국장
경상북도	김○○	- 전남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A-WEB(세계선기기관협의회) 사무국장
경상남도	원○○	- 세종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강○○	- 광주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 -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구표 및 각 시도선관위 홈페이지 위원 소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타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에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내부출신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합의제 독립행정기관 구성·운영 사례>

(단위: 명)

기관명 (총 위원수)	위원 구성		기관명 (총 위원수)	위원 구성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공정거래위원회 (9명)	5 (모두 내부)	4	원자력안전위원회 (9명)	2 (모두 내부)	7
감사원 (7명)	7 (4명 내부)	-	금융위원회 (9명)	4 (3명 내부)	5
국가인권위원회 (11명)	4 (1명 내부)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명)	2 (1명 내부)	7
방송통신위원회 (5명)	5 (내부 없음, 3인 공석)	-	국민권익위원회 (15명)	7 (2명 내부)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66명)	3 (내부 없음)	63	중앙노동위원회 (173명)	1 (모두 내부)	172
시·도선거관리위원회 (136명)	17 (모두 내부)	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	1 (내부 없음)	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추가

- 물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 또는 사무국 등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어¹⁶⁾ 사무기구를 통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보좌가 가능

1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사무기구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지명하는 관례는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상임위원 자격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입법취지¹⁷⁾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특히,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제1항), 내부적 이해관계를 지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현행 구조는 조직·인사상 복무기강 해이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같은 관행적 부조리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¹⁸⁾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급 공무원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 하위규칙으로 그 임기를 2년으로 축소·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규정¹⁹⁾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② ~ ⑨ (생략)

⑩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⑫ ~ ⑰ (생략)

17)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요건은 과거에는 없었다가, 1987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이 규정하였음.

18) 서울신문(2024.5.8.), “극히 이례적인 조직”

노컷뉴스(2024.4.30.), “헌법기관임에도 가족회사처럼 느슨한 선관위 도덕 불감증”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도 2024년 4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을 발표하면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급 공무원 자리(17명)에 내부직원만 임명하고, 하위규칙으로 임기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편법적 조직운영이라 지적한 바 있음.²⁰⁾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직에 내부직원만 임명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그 임기를 축소·운영하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0) 감사원(2024.4.29.),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https://www.bai.go.kr/bai/board/base/detail?brdId=BAK_0007&postNo=243)

라. 선거철에 압박하여 급증하는 휴직자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대한민국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²¹⁾ 이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통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공무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행정안전부의 정원관리 통제 및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예산 통제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만을 거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원 관리가 가능한 관계로 중앙행정기관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원을 증원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어, 2019년 이후 2024년 1월까지 총 8번의 규칙 개정을 통해 115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음.

21)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급 1명, 5급 24명, 6급 41명, 7급 39명, 8급 10명 등 4급에서 8급까지의 직급에 대해 115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연간 두 차례씩의 정원 증원이 이루어졌음.²²⁾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 연혁>

(단위: 명)

구 분	2019. 1. 1.	2020. 1. 1.	2020. 2. 21.	2021. 1. 1.	2021. 6. 18.	2022. 1. 1.	2023. 1. 1.	2024. 1. 1.
정무직	3	3	3	3	3	3	3	3
1급	21	21	21	21	21	21	21	21
2급	25	25	25	25	25	25	25	25
3급	23	23	23	23	23	23	23	23
4급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6
5급	292	297	297	300	300	306	315	316
6급	883	884	888	897	901	916	923	924
7급	956	967	972	979	990	993	993	995
8급	241	251	251	251	251	251	251	251
9급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기타	1	1	1	1	1	1	1	1
합 계	2,867	2,894	2,903	2,922	2,937	2,961	2,977	2,982
증원	-	27	9	19	15	24	16	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각종 단속업무, (예비)후보자에 대한 각종 사항 안내 등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은 정기직제 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소요인력에 대해 두 차례 증원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임.

□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정원 대비 결원은 59명에 달하는 등 매년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과 별개로 예측불가능한 휴직인원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최근 5년 간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5. 31.)
정 원	2,867	2,903	2,937	2,961	2,977	2,982
현 원	2,857	2,871	2,905	2,949	2,918	2,965
결 원	△10	△32	△32	△12	△59	△1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직이 업무량이 많은 선거철에 몰리는 현상인데, 선거가 있는 달에는 휴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음.

- 휴직사유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이 가장 많고, 선거가 있는 달에는 “일반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모두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최근 선거철 휴직자 현황>

(단위: 명)

휴직연월		공무상 질병 휴직	일반 일 휴직	유학 휴직	연수 휴직	병역 휴직	육아 휴직	가사 휴직	가족 돌봄 휴직	해외 동반 휴직	자기 개발 휴직	합계
21대국선 (20.4.)	2019.4.	-	11	2	2	-	84	5	-	5	-	109
	2020.4.	1	21	4	2	2	78	9	-	10	1	128
20대대선 (22.3.)	2021.3.	-	13	-	-	3	71	3	-	3	-	93
	2022.3.	-	57	-	-	3	123	11	4	6	-	204
8회지선 (22.6.)	2021.6.	-	14	-	-	3	77	4	-	3	-	101
	2022.6.	-	69	-	-	3	134	8	6	6	-	226
22대국선 (24.4.)	2023.4.	-	32	-	1	7	98	3	6	4	1	152
	2024.4.	-	42	2	1	3	97	-	16	5	2	168

※ 주석: 위 자료의 휴직자 현황은 해당 월에 휴직을 신청한 인원이 아니라, 해당 월에 휴직이 되어 있는 휴직자 누계 인원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와 같이, 선거철에 일시적으로 휴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과거 지방공무원을 경력 채용으로 뽑아온 것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도 있음.²³⁾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철에 임박하여 휴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계획 수립을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²³⁾ 더팩트(2024.6.26.), “선거철에 휴직자 몰리는 선관위...대체 경력 채용 비리 온상”
서울신문(2024.5.20.), “역대급 선거의 해는 휴직의 해....그 틈타 자녀 자리 챙겨”

2. 국회의원선거관리 등 선거관리 세부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다른 세부사업에 중복 편성·운용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세부사업의 집행실적과 성과평가를 위한 국회의 예산 과정에서 심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예방활동,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선거방송토론, 선거여론조사심의 세부사업과 동일한 내역사업(위법행위예방단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선거방송토론관리, 선거여론조사심의 내역사업)을 국회의원선거관리·재보궐선거관리 등 선거관리 세부사업에 중복하여 편성·운용하고 있음.
- 위법행위예방활동 등의 세부사업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필수 기본경비 성격을 띠고 있어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등의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위법행위예방활동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해당 세부사업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선거관리 세부사업에 유사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각 선거관리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공직선거별

전체 경비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용이하고, 선거경비를 운영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선거관리사업 내에 편성된 유사한 내역사업 및 고유의 세부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회의원선거관리			재보궐선거관리		
	내용	예산액	집행액	내용	예산액	집행액
위법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예산	925	596	재보궐선거 관련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예산	130	129
인터넷선거 보도심의				재보궐선거 관련 심의 위원회 운영	12	11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재보궐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 개최	32	32
선거여론 조사심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불법여론조사 모니터팀 운영	171	123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 여론조사심의	15	13
세부사업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위법행위 예방활동	상시로 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 및 상시(사이버)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예산				12,002	11,318
인터넷심의 기반조성	상시로 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 모니터링 예산, 인터넷언론사 대상 자체 불공정선거보도 모니터링 실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실시예산				116	115
선거방송토론	정당정책토론회 및 열린 토론대회 개최 예산, 각급 토론위원회 운영 예산 등				474	460
선거여론 조사심의	상시로 운영하는 선거여론조사 분석·모니터링 예산,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운영, 선거여론조사 연구용역 등 심의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				300	29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동일 목적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별 전체 경비규모 파악 및 효율적인 선거경비 운영을 이유로 세부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내역사업을 각 선거관리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세부사업과 각 공직선거관리 내역사업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동일한 목적의 사업예산을 다른 세부사업에 중복 편성·운영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공직선거법」 제10조의2²⁴⁾ 및 제10조의3²⁵⁾에 따르면 각급 선거

24) 「공직선거법」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⑥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⑦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5)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본다.

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²⁶⁾을 두도록 하고 있
 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공
 정선거지원단²⁷⁾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 현황>

구분	신분	법상 구성 인원수					예산편성
		구분	시기	중앙 위원회	시·도 위원회	구·시·군 위원회	
공정 선거 지원단	일반인 채용	상시 지원단	상시	10인 이내	10인 이내	10인 이내	위법행위 예방활동 (1133-333)
		선거 지원단	선거일 전 60일~ 선거일 후 10일	10인 이내 추가	10인 이내 추가	20인 이내 추가	각 선거관리 사업
사이버 공정 선거 지원단	일반인 채용	상시 지원단	상시	5인 이상 10인 이하	-	-	위법행위 예방활동 (1133-333)
		선거 지원단	선거일 전 60일~ 선거일 후 10일	10인 이내 추가 구성	-	-	각 선거관리 사업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	30인 이내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활동하는 (사이
 버)공정선거지원단을 “상시지원단”으로,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추가로 운영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선거지원
 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6)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련 활동 정황 및 정보수집, 각종 행사·모임 현장에서의 안내·감시, 선거비용 자
 료수집·관리 등 단속행정 업무보조를 수행함

27)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공간에서의 선거관련 활동 정황 및 정보수집, 위법게시물 모니터링, 디
 지털포렌식 조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각 지원단의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시지원단은 위법행위예방활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에서 운영경비 및 활동비 등이 집행되고 있으며, 선거지원단의 운영경비 및 활동비 등은 국회의원선거관리, 재보궐선거관리 등 각 선거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위법행위예방단속)에서 집행되고 있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해당연도	구분	예산액	집행액
2023년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2,002	11,318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7,019	6,499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557	523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3,567	2,932
	위법행위예방단속	925	596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1,627	1,597
	위법행위예방단속	130	12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두도록 하면서 선거기간 전·후로 인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기간 동안 단속 및 지원 등의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지원단과 선거지원단의 업무를 구분하고 각각 다른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평시 운영하는 상시지원단과 선거기간 추가되는 선거지원단의 업무는 동일하게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즉, 양자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복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운용하는 것은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둘째, 세부사업과 별도로 선거관리경비에 동일한 내역사업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 간 구분없이 혼용하여 집행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²⁸⁾로 상시업무의 예산은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세부사업에 편성하면서, 선거기간 증가하는 예산 소요는 각 선거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터넷선거보도심의)에 편성하고 있음.

28)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해당연도	구분	예산액	집행액
2023년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16	11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등	80	79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1,627	1,597
	인터넷선거보도심의	12	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업무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금을 회의의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세부사업 간에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회의의 안전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안은 재보궐선거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고유업무임에도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사례금을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세부사업이 아닌 “재보궐선거관리” 세부사업에서 집행하였음.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 세부사업 혼용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개최일	참석인원	회의 참석 수당	안전 검토 사례금	회의안전
재보궐 선거관리 (1131-303)	2023.01.17.	8	1,050	-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 위원장 호선안외 1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 2023년도 상반기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3.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
	2023.02.22.	9	1,200	1,200	•아시아뉴스전북 등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관한 심의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 상반기 재보궐선거 업무추진 상황 2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2023.03.22.	10	1,350	-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 상반기 재보궐선거 업무추진 상황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요약

□ 이처럼, 예산조정 없이 세부사업 내에서 내역사업 간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각 내역사업의 집행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다른 세부사업에 중복 편성·운용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세부사업의 집행실적과 성과평가를 위한 국회의 예·결산 과정에서 심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세입결산】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채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물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납물 제고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의 반환명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행하고 있어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에 대한 관리권한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물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당선무효된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국고귀속대상 정치자금 등으로서,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억 1,000만원이며, 17억 2,9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4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예산액 (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C/A	C/B		
기타경상이전수입	710	710	1,729	476	67.1	27.5	1,253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 수납률 제고노력 지속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²⁹⁾에 따라 당선무효된 자가 반환하는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및 「정치자금법」 제18조³⁰⁾에 따른 불법후원금 국고귀속액 등이 해당함.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의 종류별로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을 경우 기탁금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후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또는 정당은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함.
- 2020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에 대하여 사후 징수 결정을 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이 100%로 고정되는 결산상 문제점이 있었으나, 국회와 감사

29)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 ~ ⑤ (생략)

30) 「정치자금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원의 지적³¹⁾에 따라 2021년부터는 이전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반영되었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2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7.5%로 과거 미수납액까지 징수결정액에 반영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고, 미수납액은 12억 5,3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19	662	662	662	662	99.9	100.0	-	-
'20	10,015	10,015	11,970	11,970	119.5	100.0	-	-
'21	1,380	1,380	2,294	914	66.2	39.8	1,380	-
'22	3,695	3,695	7,427	6,148	166.4	82.8	1,279	-
'23	710	710	1,729	476	67.1	27.5	1,253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은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으로, 특히 국가선거보전비용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국가선거보전비용 등이 당선무효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환수될 필요가 있으므로,

31) (2018회계연도 결산 행안위 검토보고서) 징수사유가 발생한 세입을 즉시 징수결정액에 계상하고, 실제 세입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2019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선거비용 반환채권액 전체가 아닌 반환된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수입징수 결의를 함으로써 미수납액에 대한 미납·결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채권관리 부실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 2023년까지의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의 미수납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반환명령된 1억 8,100만원은 전액 반환되었으나, 2023년 이전의 미반환액까지 포함하면 2024년 1월 31일 기준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은 총 11억 6,400만원이며, 모두 임의체납³²⁾되었음.

<국가선거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2024. 1. 31. 기준)

연 도	반환명령액	미반환액	주요 미반환 사유		
			납기미도래 ³³⁾	징수유예 ³⁴⁾	임의체납
2018년 이전	6,961	952	-	-	952
2019	210	-	-	-	-
2020	240	134	-	-	134
2021	464	-	-	-	-
2022	78	78	-	-	78
2023	181	-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체납기간별로 보면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11억 6,400만원 중 9억 5,200만원(81.8%)이 5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며, 나머지 2억 1,200만원(18.2%)만 체납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여 미반환액의 대다수가 장기 체납금액임을 알 수 있음.

32) “임의체납”이란 납기미도래나 징수유예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체납한 경우로서 반환자가 비용을 반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액을 내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함.

33) “납기미도래”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34) “징수유예”란 국제징수법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바에 따라 조치한 경우로서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국가선거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원, 2024. 1. 31. 기준)

구 분	체납기간						계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기간별 현황	-	-	2	212	9	952	11	1,16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임의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은 납기미도래나 징수유예와 달리 납기도래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 등에 따른 자진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체납액의 대다수가 5년 이상 체납되어 해당 채권이 시효³⁵⁾의 완성으로 소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등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멸시효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징수(재)위탁을 하는 경우 민법 제168조³⁶⁾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중단되는데, 미반환자의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징수불가 통보를 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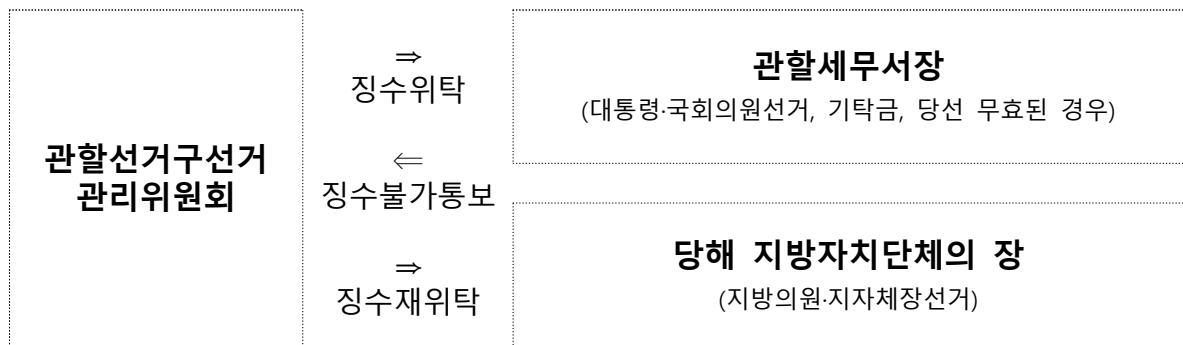
35)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6)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이처럼, 징수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후 미반환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수를 재위탁하는 등 반환채권액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징수(재)위탁 절차>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서에 징수위탁한 172건(262억 8,900만원)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세무서에 다시 징수위탁한 건은 3건(8,200만원)에 불과하고 이 중 2건은 재위탁하여 반환채권액의 징수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69건(262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다시 징수위탁을 하지 않아 선거비용 반환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추가 조사하여 징수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음.³⁷⁾

37) 감사원 감사기간 중 징수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6명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이후 반환의무자의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명의 반환의무자에게 3억 5천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시 징수위탁을 하였다면 반환채권의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체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를 (재)위탁하는 등 시효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한 수납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 추가적인 행정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⁸⁾

다. 지방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에 대한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선무효된 후보자 등이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을 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여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부적정(주의), 2019년 10월 17일.

38) 제21대국회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의안번호 제2113909호, 제2125417호)

장에게 납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기타 경상이전수입 내역에 반영되어있는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현황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 귀속분에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결산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주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서 해당 내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에 대하여는 직접 수입징수결의하거나 납입고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수입징수결의나 납입고지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한 결산상 이월이나 결손처분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해당 미반환액 전체에 대하여 수입징수결의를 하여 이를 결산상에 온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179억 5,200만원(67건) 중 수입징수 결의가 완료된 것은 42억 3,300만원(30건)에 불과하며, 전체의 76.4%에 이르는

137억 1,900만원(37건)의 채권은 수입징수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비 세입의 결손 및 부적정한 채권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임.

- 상대적으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의 미이행이 많은 편이며, 전체 교육감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151억 6,800만원 중 수입징수결의가 완료된 액수는 24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16.3%에 불과함.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징수결의 현황>

(단위 : 백만원, 2024. 1. 31. 기준)

구 분	완료		미완료		전 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0	4,233	37	13,719	67	17,952
지방자치단체	28	1,754	26	1,030	54	2,784
서울	-	-	5	90	5	90
부산	1	104	4	138	5	242
대구	-	-	2	47	2	47
인천	-	-	1	28	1	28
광주	-	-	1	5	1	5
대전	1	114	-	-	1	114
경기	5	399	-	-	5	399
강원	1	25	1	29	2	54
충북	2	138	1	91	3	229
충남	4	87	-	-	4	87
전북	3	193	-	-	3	193
전남	4	236	4	138	8	374
경북	4	369	4	363	8	732
경남	3	89	3	101	6	190
교 육 청	2	2,479	11	12,689	13	15,168
서울	-	-	3	7,048	3	7,048
부산	-	-	1	186	1	186

인천	-	-	2	1,416	2	1,416
울산	-	-	1	428	1	428
충북	-	-	1	507	1	507
충남	2	2,479	-	-	2	2,479
전북	-	-	1	321	1	321
경북	-	-	1	1,299	1	1,299
경남	-	-	1	1,484	1	1,48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상술한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없음. 그러나, 당선무효된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의 반환명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있고, 미반환된 지방선거보전비용과 기탁금에 대한 관리업무는 넓게 보았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선거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후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도 차기 지방선거에 재출마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의 사례³⁹⁾가 다수 발생하는 등 선거비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39) 뉴스1(2023.10.10.), “당선무효 123명, 선거비용 230억 반환안해...먹튀 후 재출마도”
전주MBC(2022.5.27.), “보전금 반환 안 한 채 재출마..○○○, ○○○ 후보”

<보전비용 미반환자 중 공직선거 출마 및 보전비용 보전 현황>

연번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	반환대상금액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재출마 선거	보전금액
1	제4회 지방선거	19	-	19	제6회 지선(낙선) 제7회 지선(낙선)	43
2	제4회 지방선거	26	-	26	제6회 지선(낙선)	-
3	제4회 지방선거	12	9	3	제6회 지선(낙선)	-
4	제4회 지방선거	24	-	24	제6회 지선(당선)	46
5	제4회 지방선거	21	-	21	제6회 지선(낙선) 제7회 지선(낙선)	71
6	제4회 지방선거	17	-	17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낙선)	47
7	제5회 지방선거	128	118	10	제7회 지선(낙선)	46
8	제5회 지방선거	85	-	85	제7회 지선(낙선) 제21대 국선(낙선)	-
9	제5회 지방선거	37	-	37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당선)	75
10	제5회 지방선거	83	-	83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사퇴)	75
11	제5회 지방선거	110	-	110	제8회 지선(낙선)	139
12	제5회 지방선거	21	-	21	제7회 지선(낙선)	-
13	제5회 지방선거	32	-	32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당선)	130
14	제5회 지방선거	105	-	105	제8회 지선(낙선)	106
15	제5회 지방선거	80	-	80	제7회 지선(낙선) 제8회 지선(낙선) 제21대 국선(낙선)	379
16	제5회 지방선거	29	-	29	제7회 지선(낙선) 제8회 지선(낙선)	18
17	제6회 지방선거	111	1	110	제8회 지선(낙선)	-
18	제6회 지방선거	24	15	9	제8회 지선(낙선)	14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64	28	136	제6회 지선(낙선)	44

※ 참고: 노란색 셀은 소멸시효 완성자(2024. 1. 31. 기준), 성명 등 개인정보는 연번으로 대체,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선거보전
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결의를 실시하여 채권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감사원이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에서 권고⁴⁰⁾한 바와 같이, 당선무효된 자 등으로부터 반환받는 선거비용의 징수위탁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⁴¹⁾를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5조의2⁴²⁾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위탁하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0) 2019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https://www.bai.go.kr/bai/result/organ/list>)

“지방선거의 당선 무효된 자 등으로부터 반환받는 선거비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미납 금액 전체에 대해 수입징수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41)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42)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세출결산】

1.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설치 후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까지의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합의가 법적 기한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기준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기거나 획정위 설치 및 선거구 획정기한을 순연시키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은 「공직선거법」 제277조⁴³⁾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8억원이고 예산현액 35억 6,700만원 중 29억 3,200만원을 집행(82.2%)하고 6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3,800	3,800	-	△233	-	3,567	2,932	-	635	280,99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3)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 「공직선거법」 제24조⁴⁴⁾는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2⁴⁵⁾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 제25조⁴⁶⁾는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면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1월 31일) 현재

44)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 ⑩ 생략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5)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46)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⁴⁷⁾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선거구획정 일정>

획정위 설치일	인구기준 시점	획정안 제출기한	선거구 확정기한	국회의원선거일
2022.10.11 (선거일 전 18개월)	2023.1.31. (선거일 전 15개월 달 말일)	2023.3.10. (선거일 전 13개월)	2023.4.10. (선거일 전 1년)	2024.4.10

□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1일 설치되어 같은 날 제1차 회의(안건: 위원장 호선)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인구기준이 확정되는 1월 31일 전까지 세 차례의 회의(제1차~제3차)를 개최하고, 인구기준 확정 후 공청회 개최를 시작하였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내역>

구분	일 시	내 용
제1차	2022. 10. 11.	위원장 호선
제2차	2022. 12. 2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진행안
제3차	2023. 1. 26.	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선거구획정안 마련 공청회 진행방안

47)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4차	2023. 2. 1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확정 위한 공청회 개최(1차)
제5차	2023. 3. 13.	위원회의 운영방안 논의
제6차	2023. 4. 2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확정 위한 공청회 개최(2차)
제7차	2023. 6. 16.	위원장 궐위에 따른 후속 절차
제8차	2023. 6. 21.	위원장 호선 (허철훈 위원)
제9차	2023. 7. 21.	위원회의 운영 관련 논의
제10차	2023. 9. 8.	선거구확정 기준 등 확정 재촉구문안 의결
제11차	2023. 10. 20.	위원회의 운영 방안 논의
제12차	2023. 11. 17.	선거구확정 기준 등 확정 촉구문안 의결
제13차	2023. 11. 28.	선거구확정안 관련 논의
제14차	2023. 12. 1.	선거구확정에 대한 정당의견 청취
제15차	2023. 12. 2.	선거구확정 세부방안 논의
제16차	2023. 12. 3.	선거구확정 세부방안 논의
제17차	2023. 12. 4.	선거구확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제18차	2024. 2. 6.	선거구확정안 관련 논의
제19차	2024. 2. 29.	선거구확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확정위 설치 시점(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과 선거구확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간격은 100일이 넘는 상황으로, 확정위 구성 후 인구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은 선거구확정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 활동 및 확정 관련 회의 개최 등 확정위의 선거구확정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 실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1일에 설치된 이후 인구기준이 확정되는 2023년 1월 31일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 ‘획정위 운영규정안’, ‘획정위 회의진행안’ 등으로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인구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획정위가 선거구획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2023년 1월 31일 인구기준 확정 후 2월 6일에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1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과 선거구획정안 제출시점(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의 간격은 약 40여일로, 획정위가 그 기간 동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역 현지의견 청취, 정당의견 청취 등의 관련 절차 진행 및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합의과정을 진행하여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구기준 외에도 시·도별 의원정수 및 지역구 인구 상·하한 등이 있는 바,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의원정수 및 지역구 인구 상·하한의 결정 방법 및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구기준 확정 이후 약 40여일간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시·도별 의원정수 및 지역구 인구 상·하한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보임.

□ 따라서, 획정위 설치 후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합의가 법적 기한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을 현행보다 3개월 가량 앞당기거나 획정위 설치 및 선거구획정 기한을 3개월 가량 순연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보완을 통해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위탁선거관리(1131-3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에서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함.

가. 개 요

- 위탁선거관리 사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와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5억 100만원이며, 이 중 4억 8,800만원을 집행(97.4%)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도									2023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501	501	-	-	-	501	488	-	13	25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만, 동 사업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한정되고,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법적 근거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결산 대상에 누락되어 있음.

□ 2023년에 위탁단체가 부담한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납부액 381억 6,300만원 중 340억 200만원을 집행(89.1%)하고, 41억 6,100만원을 반환하였음.

<2023년 위탁선거관리경비 납부 및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선거종류	선거수	납부액	집행액	반환액	집행률
2023년	의무위탁 ⁴⁸⁾	1,375	38,138	33,985	4,003	89.1
	임의위탁 ⁴⁹⁾	1	25	17	8	68.0
	전체 위탁선거	1,376	38,163	34,002	4,161	89.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 “의무위탁”이란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선관위에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선거로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선거 등이 있음.

49) “임의위탁”이란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선거로서, 정당의 당내경선,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등이 있음.

나.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필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제78조(선거관리경비)⁵⁰⁾에 따르면 위탁단체는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④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을 부담하고, 국가는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와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 위탁선거관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 및 결산 과정을 거치지

5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그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를 제4항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출한 선거관리경비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가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만,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경우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탁단체 부담 위탁선거경비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경비
 산출 → 납부 → 집행 → 반환의 절차를 거침.

<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

구 분	내 용	
경비부담	위탁단체	국가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이하 아래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참고	⇒ 통상적인 국가재정 절차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경비 산출	· 중앙위원회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관할위원회 통지 · 관할위원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	
납부 (위탁단체 →선관위)	· 위탁선거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 :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집행 (선관위)	·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업무별·시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 중앙, 시·도위원회는 통합적 사무수행을 통한 능률적 예산집행을 위해 관할위원회로부터 경비를 납부받아 일괄집행 가능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지침 및 회계실무요령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 집행잔액으로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등 목적 외 집행 불가	
반환 (선관위 →위탁단체)	· 중앙, 시·도위원회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 ·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통지	
기타	·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 제출(관할위원회 → 상급위원회 → 중앙위원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절차사무편람」

□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⁵¹⁾, 위탁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⁵²⁾된 국가사무로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위탁선거법」에는 위탁단체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⁵³⁾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도 국가예산 체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감사원의 결산검사 및 국회의 결산심사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임.

□ 과거 국회 결산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위탁단체 부담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음.

51)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53) 경비 부담주체,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반 관련 국회 시정요구 >

구 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1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19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2018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2016 회계연도 결산	○‘특별정려금’ 용어를 순화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위는 위탁선거 경비를 「위탁선거법」에 따라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납부 받아 단순 집행하고 잔액은 반환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의 수입·지출로 보기 어렵고, 선거의 규모 및 시기 예측 곤란 등의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하는 수입·지출인 위탁선거관리 경비를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①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② 현물출자, ③ 외국차관의

전대, ④ 차관물자대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때, ⑤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⁵⁴⁾ 「정부기업예산법」은 회전자금⁵⁵⁾을,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 수익금⁵⁶⁾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되고, 제22대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은 현재 발의되지 않은 상황임.

5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56)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 제21대국회 관련 개정안 >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심사 결과
2104455	이해식의원	2020.10.08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명시함 (위탁선거관리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임기만료 폐기
2109879	임호선의원	2021.05.03		
2119266	전봉민의원	2022.12.30		

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의무위탁에 관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반영한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

-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1960년대 서민·농민의 생활고와 고금리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 조직으로 출발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조합과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구분됨.⁵⁷⁾
-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⁵⁸⁾
- 그런데, 종전의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선거 관리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의위탁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개정된

57)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5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감사·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용협동조합법⁵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지역조합 이사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장)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023.7.18. 일부개정, 2023.10.19.시행)
제2장 조합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생략)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장 조합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군선거관리위원회</u> (이하 이 하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59)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023.7.18.일부개정, 2023.10.19.시행)

60) 개정 전의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선거 관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조합 임원의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논란 등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제기되며, 선거의 과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국제뉴스(220.2.8.), “대전 온누리신협, 선거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 충청일보(2021.5.16.), , “음성신협이사장 선거 ‘고소戰’” 등 참조

③ ~ ⑬ (생략)

<신설>

제3장 중앙회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생략)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
2, 제27조의3,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를 준용한다.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
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
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
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
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장 중앙회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7조의
3제1항-----.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
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
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위탁선거법」은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를 구분⁶¹⁾하여 의무위탁을 하는 공공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의 경우 선거운동 및 벌칙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⁶²⁾하고 있는데, 현행 「위탁선거법」은 의무위탁선거로 변경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의 조합 및 중앙회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특히,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부칙에서 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일을 임기 시작일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또는 2029년 11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선거에 대한 의무위탁은 개정 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선거부터 적용하도록

61) 「위탁선거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62) 「위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12호,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항·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음.⁶³⁾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2일 동시선거일에는 의무위탁에 해당하는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조합이 없으나, 중앙회장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선거가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12월 전까지는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2025.12.)까지 「위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의무위탁선거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각종 선거운동 규제(제7장 선거운동)와 벌칙(제10장 벌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신용협동조합법」의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려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제21대국회

63) 법률 제19565호(시행 2023.10.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 ⑨ (생략)

에서 발의⁶⁴⁾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고, 현재는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64) 의안번호 제2111353호,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 행사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관(官)주도의 하향식·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투표일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유권자의 날 기념일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 개 요

-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은 아름다운 선거정착을 위한 상시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2억 5,400만원이며 이 중 21억 2,000만원을 집행(94.1%)하고 1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254	2,254	-	-	-	2,254	2,120	-	134	1,35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유권자의 날 관련 하향식·일회성 행사 지양 및 법개정 검토 필요

- 2023년 예산에서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를 위한 경비는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에 1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세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편성	집행
공명선거기반조성	2,254	2,120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34	34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757	739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85	150
한국선거방송 운영	1,009	942
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	229	223
정치후원금조성 촉진활동	40	3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업설명자료

- “유권자의 날”이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로 2012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음.⁶⁵⁾

65)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유권자의 날을 5월 10일로 정한 것은 해방 이후 보통선거를 최초로 실시하였던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한 것인데, 1948년 5월 10일은 총선을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날임.
- 다만, 유권자의 날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일인데, 기념일이 가장 많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근로자의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공휴일), 어버이날(5월 8일), 스승의날(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로 양력으로는 통상 5월, 2024년은 5월 15일, 공휴일) 전후로 위치하여 국민적 인지도나 관심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⁶⁶⁾
- 또한, 2023년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를 위하여 실시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 행사들이 기념일을 위한 기념식이나 방송 제작, 공모전 등 선관위가 동원하여 실시하는 하향식(top-down) 행사이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다보니 실제 주인공인 유권자의 참여 및 인식 변화가 어느 정도 제고되었는지 확인하는 환류(feedback) 과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66) 아시아경제(2018.5.10.), “빨간 날도 아닌데 달력엔 써있는 유권자의 날, 무슨 날인가요?”

<2023년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경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
중앙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 일시 : 5. 10. 14:00 - 식전행사 : 유권자의 노래 상영 - 본행사 : 국민의례, 기념영상, 유공자 포상	65,000
서울	사랑하는 이와 함께 꽃피는 민주주의 향기로운 유권자의 날	- 시기 : 5. 11., 5. 13. - 선거를렛 · 선거골드벨 퀴즈, 모의 투표체험	5,000
부산	키자니아와 함께하는「아름다운 유권자의 날 PLAY」행사 개최	- 시기 : 5. 10. ~ 5. 16. - 키자니아 CITY선거' 주제로 투표체험 실시	5,000
대구	「대한민국 유권자, 다와락페스티벌」	- 시기 : 5. 13. 0X퀴즈 골드벨, 선거홍보관 투어, 체험부스 운영	5,000
인천	제3회 다(多)가치 다카시(詩) 공모전	- 시기: (접수·심사) 4.3.~5.2./ (전시) 5.10.~5.31. - 유권자 대상 공모전 개최	4,911
광주	광주MBC와 함께하는 유권자의 날 기획 방송 제작	- 시기: 5. 9. (방송 일자) - 유권자의 날에 대한 10분 정도의 영상 제작·방영	5,000
대전	언론사 협업 “유권자가 주인이다”	- 시기 : 5. 1. ~ 5. 31. - 유권자의 날 의의 등 방송 대담 · 인터뷰(5. 8.)	5,000
울산	유권자와 함께 만드는 아트타일 벽화	- 시기 : 5. 13. - 선거·투표 등을 주제로 한 아트타일 제작 · 설치	5,000
세종	YOU(유)권자와 함께 세종한바퀴	- 시기 : 5. 10. ~ 5. 16. - 지역방송국(TJB) 협업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관련 기획방송 프로그램 방영(5. 16.)	5,000
경기	“나는 프로 유권자다” 지역 스포츠구단 협업 캠페인	- 시기 : 5월중 - 기념 시축, 대형 전광판 및 LED 광고보드에 영상 · 문구 표출, 사전투표체험 · 페이스페인팅 등 캠페인	5,000
강원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방송 제작	- 시기 : 5. 12. 방영 -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의 날 등을 소개	5,000
충북	선거 퀴즈 풀고, 선거 DIVE!	- 시기 : 5. 17. - 고등학생 새내기유권자 대상 선거퀴즈대회 개최	4,757
충남	유권자와 함께 하는 물빛 선거 축제	- 시기 : 5. 4. ~ 5. 12. - 예당호 출렁다리 레이저빔 영상쇼(음악분수) 이용 ‘유권자의 날’ 기념 영상 표출	5,000
전북	5월 10일 유권자의 날! ‘오~ 십만보 챌린지’	- 시기 : 4. 27. ~ 5. 10. - 도민 대상 십만보 챌린지 진행	4,726
전남	다문화가족의 “나의 선(選)한 이야기” 콘테스트 왕중왕전	- 시기 : 4 ~ 5월 - 역대 수상자(10개국 32명) 소감 발표 왕중왕전	4,946
경북	제2회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영상 공모전	- 시기 : 접수·발표: 4.10.~5.8. - 유권자 자기PR 영상 공모(3분 이내 자유형식)	5,000
경남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공감·소통 연[然]극	- 시기 : 5. 13. ‘극단 예도’ 주관 연극 제작 · 상연	5,000
제주	미래유권자 오십(5·10)초 영상 공모전	- 시기 : 5월중 - 중 · 고교생 대상 영상 공모	5,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요약

□ 이와 같이, 2012년 유권자의 날이 제정된 이래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기념식 행사와 홍보 방송 제작, 공모전을 위한 이벤트성 일회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유권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임.

<최근 5년간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경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사업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합계	145	150	145	138	185	185	185	175	185	150
	중앙	60	73	60	55	100	100	100	99	100	65
	시도	85	77	85	83	85	85	85	76	85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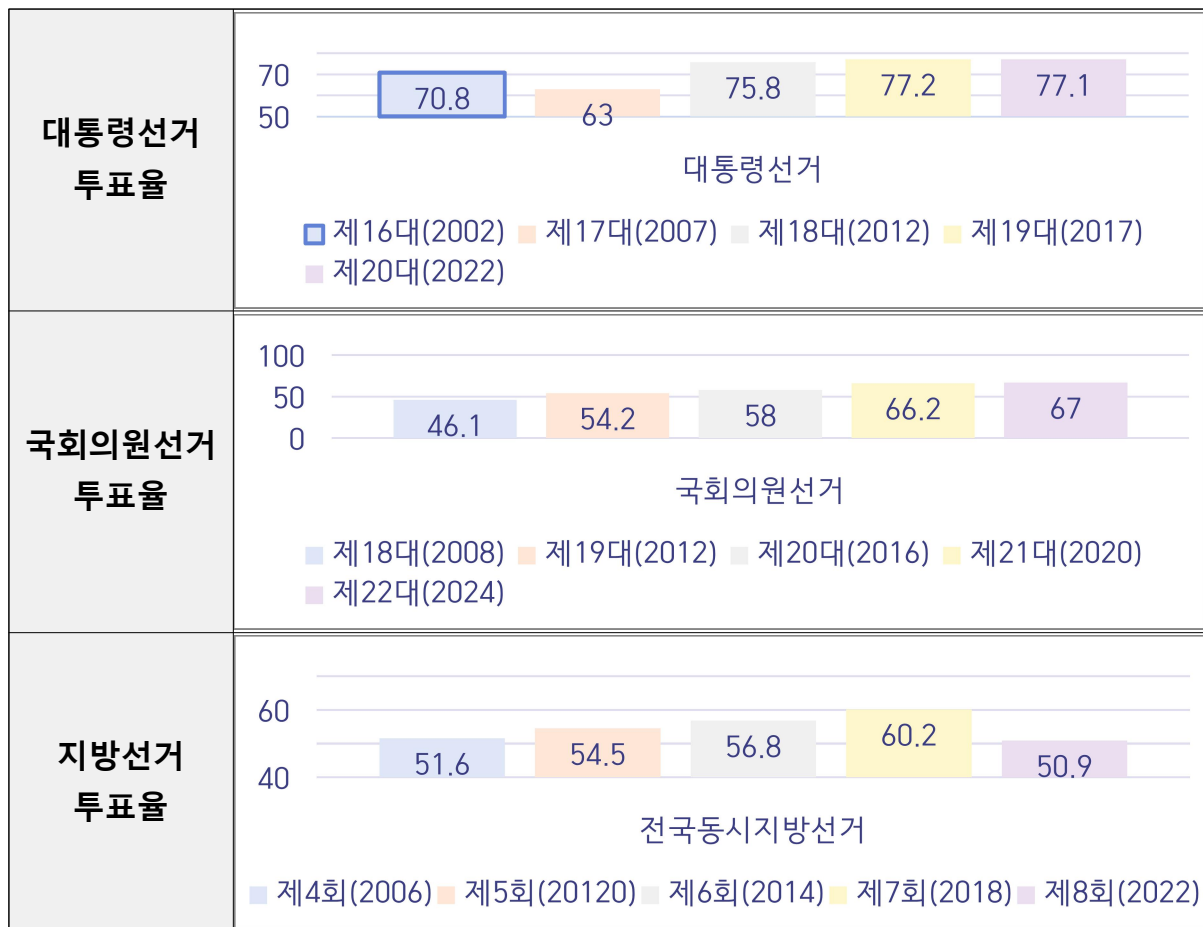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유권자의 날의 의미와 발전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용역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점, 추진 주체가 중앙과 지방의 선관위로 시민들 및 기타 선거·정치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매우 제한적이고 기념식, 수상 및 이벤트 등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지적은 유권자의 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실정임.⁶⁷⁾

67) 한국선거학회, “유권자의 날의 의미와 발전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2016), p.114.

□ 해외사례로 가장 전형적인 대의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투표일 자체를 “투표일 축제(election day festival)”로 하여 선거가 지역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축제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는데,⁶⁸⁾ 정착되어있는 투표율 향상을 위해서는 투표일과 별개로 유권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여 민주시민의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임.

<최근 각종 공직선거 투표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68) 한국선거학회, “유권자의 날의 의미와 발전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2016), p.111.

- 다만, 현재 유권자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유권자의 날 행사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관(官)주도의 하향식·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투표일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유권자의 날 기념일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임.

4. 선거방송토론(1135-3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임의 겸임 위원을 선임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임.

가. 개 요

□ 선거방송토론 사업은 각종 선거방송토론을 통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올바른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4억 7,400만원 중 4억 6,000만원을 집행(97.0%)하고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선거방송토론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474	474	-	-	-	474	460	-	14	35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필요

- 「공직선거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며, 동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하여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됨.⁶⁹⁾
-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려는 점에서 설치 취지의 유사성이 있으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대담·토론회⁷⁰⁾와 정책토론회⁷¹⁾(이하 ‘토론회

69)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70)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

등')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법
상 개최되는 토론회등의 공정성을 특별히 담보하기 위해 각급선
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따로 설치되는 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짐.

□ 따라서, 토론회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선거방송토론위
원회의 위원 구성의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 법상 겹임을 제
외하더라도 임의 겹임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임.

□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⁷²⁾는 법상 겹임이 가
능한 위원 외의 위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방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
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71)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
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72) 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넓은 직무 범위를 고려하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 취지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의 겹임은 가능하게 정하는 반면, 그 외 구·시·군선거방
송토론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겹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송토론위원회 겸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제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겸임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서로 다른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선거사무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의 당연직 겸임위원을 제외한 겸임위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에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의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대의견 채택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현재 전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1,828명 중 138명(7.55%)이 여전히 법령에 의한 근거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전라북도, 경상북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임의 겸임 위원 비율이 37.50% 10.97%로 나타나는 등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겸임 위원 현황>

(기준 : '2024. 6월 현재, 명, %)

구 분 (구·시·군수)	현원	법상 겸임		임의 겸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 체(252)	1828	742	40.59	138	7.55
서울(25)	178	74	41.57	3	1.69
부산(16)	123	47	38.21	6	4.88
대구(9)	72	26	36.11	2	2.78
인천(10)	71	29	40.85	2	2.82
광주(5)	39	15	38.46	0	0.00
대전(5)	36	15	41.67	1	2.78
울산(5)	40	15	37.50	2	5.00
세종(0)	해 당 없 음				
경기(45)	341	133	39.00	27	7.92
강원(18)	132	52	39.39	6	4.55
충북(14)	101	42	41.58	1	0.99
충남(16)	112	48	42.86	10	8.93
전북(15)	112	43	38.39	42	37.50
전남(22)	139	65	46.76	4	2.88
경북(23)	155	67	43.23	17	10.97
경남(22)	162	65	40.12	15	9.26
제주(2)	15	6	40.00	0	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임의 겸임 위원을 선임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5.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되어야 할 사무실 이전 비용 등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위원회기본경비 사업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의 집행으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62억 9,800만원이며 이 중 155억 9,900만원을 집행(95.7%)하고 6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위원회기본경비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6,298	16,298	-	±121	-	16,298	15,599	-	699	15,38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위원회기본경비 예산의 부적정 집행 주의

- 2023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용기구 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안내센터 사무실이전관련 케이블포설비용 지급, 사무실 이전에 따른 케이블, 전화선, 집기 등에 대한 비용(1,303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210-01)⁷³⁾로 집행하였음.
-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던 연초에도 일반수용비로 선거안내센터 사무실이전 관련 케이블포설비용을 지급하였고, 연말에도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이전 비용에 대해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조정 등을 통해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73) 일반수용비(210-01)는 사무용품 구입,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광고료 및 광고료, 업무용 택시 이용,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소규모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등을 위한 예산임.

<위원회기본경비 세부사업 내 일반수용비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집행주체	건명	지급일자	금액
1	법제과	선거안내센터 사무실이전관련 케이블포설비용 지급	2023. 1. 25.	3,080
2	위탁선거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망 케이블 포설작업 등 비용 지급	2023. 3. 3.	900
3	부천시을 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갑위원회 신설에 따른 가벽 공사 관련 추가 작업(복도 바닥 타일 설치 및 에어컨 컨트롤러 이전 등)비용 지급	2023. 3. 28.	1,790
4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 및 수선비 지급	2023. 5. 17.	275
5	감사과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간선 작업 및 정비	2023. 12. 19.	500
6	시설과	중앙청사 재실 표시등 이전대금 지급	2023. 12. 27.	1,650
7		사무실 재배치 및 이전에 따른 전화선 이전 대금 지급	2023. 12. 27.	4,84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은 세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또는 비품 수선비)로

인지하여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으나 향후 목별 예산 사용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입장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되어야 할 사무실 이전 비용 등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6.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 세목조정은 일정 부분 필요한 제도이나 남용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은 직원 업무능력·행정 능률성 향상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8억 300만원 중 7억 6,000만원을 집행(94.6%)하고 4,300만 원을 불용하였음.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803	803	-	±73	-	803	760	-	43	64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예산의 조정은 예산 전용보다 한 단계 낮은 예산 단위 간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① 세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세목조정), ②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상호 융통하는 제도(내역변경)로 구성됨. 「국가재정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산운용방식임.

- 예산 조정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과도한 조정은 지양해야 할 것임.

□ 그런데, 선거관리역량강화사업의 최근 5년간 이·전용, 조정 및 불용 현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9,800만원, 2023년 7월에 7,300만원을 조정하는 등 조정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선거관리역량강화 이·전용, 내역변경, 조정 및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이·전용액	조정액	이·전용 및 조정 사유		불용액
			~ 에서	~ 으로	
2019	-	9	공공요금 부족		16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15)	청사관리(7132-354-210-02)	
2020	-	-	-		383
2021	-	5	조직역량강화사업 추진 관련 임차료 부족		263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1)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7)	

(단위: 백만원)

연도	이.전용액	조정액	이·전용 및 조정 사유		불용액
			~ 에서	~ 으로	
	-	3	조직역량강화사업 추진 관련 특근매식비 부족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1)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5)	
2022	-	44	유상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90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1)	청사관리(7132-354-210-07)	
	-	10	유상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16)	청사관리(7132-354-210-07)	
	6	-	유상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20-01)	청사관리(7132-354-210-07)	
	-	44	조직역량 강화사업 추진 관련 사무기기 등 임차료 부족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1)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7)	
2023	-	7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절차사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투개표 실습장비 등 임차비 부족		43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1)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7)	

※ 2020~2021년 불용사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병(코로나19) 발생 및 유행 지속에 따른 대면 접촉 제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정 사유는 ① 조직역량 강화사업 추진 사무기기 등 임차료 부족, ② 유상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③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절차사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투·개표 실습장비 등 임차료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210-01)와 기타운영비(210-16)를 임차료(210-07)로 조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조정 사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예산 편성 시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기된 선거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역량 강화사업(2022년), 절차사무관리 역량강화사업(2023년)의 부족한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향후 배정된 예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예산 집행 시 세목조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 소요 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하였다는 문제점이 있고, 세목조정은 일정 부분 필요한 제도이나 남용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국제교류협력(7132-34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상 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제고하고, 방문국, 방문일정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 개 요

□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9억 6,300만원을 집행(92.2%)하고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위원회운영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045	1,045	-	-	-	1,045	963	-	82	1,13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국외출장 내실화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2023년도에 2억 6,3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	집행
국제교류협력	1,045	963
국제교류협력	263	187
A-WEB 운영지원	782	77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체적으로, 2023년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지출한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외국 선거참관 및 기관교류를 위하여 1억 200만원, 선거관련 국제회의 참석에 4,500만원,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위하여 4,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제교류협력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집행내역	
국제교류협력	- 국제교류 및 외국 선거참관	147
	외국 선거참관 및 기관교류	102
	선거관련 국제회의 참석	45
	- 서울국제선거포럼	4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업설명자료 Ⅱ-1, p.308 내용 요약

□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 선거참관 및 기관교류”는 다른 국가의 선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국가 간 선거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국내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선거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런데, 2023년에 실시한 외국선거 참관 방문국가(몰디브, 슬로바키아, 폴란드, 콜롬비아 등 총 4개국)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일정, 방문단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국외출장이 외국 선거참관 및 기관교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음.

<최근 5년 간 외국선거 참관 실시 현황>

구분	내역		기간	인원(명)
2019	1	에스토니아 국회의원선거 참관	02.28. ~ 03.06.	5
	2	슬로바키아 대통령선거 참관	03.14. ~ 03.21.	6
	3	태국 총선 참관	03.21. ~ 03.28.	5
	4	핀란드 의회의원선거 참관	04.11. ~ 04.17.	6
	5	영국 지방선거 참관	04.29. ~ 05.05.	6
	6	리투아니아 대통령선거 참관	05.08. ~ 05.15.	6
	7	인도 총선 참관	05.09. ~ 05.15.	4
	8	필리핀 중간선거 참관	05.11. ~ 05.16.	5
	9	아일랜드 지방선거 등 참관	05.21. ~ 05.28.	6
	10	프랑스 유럽의회선거 참관	05.23. ~ 05.30.	6
	11	벨기에 연방선거 등 참관	05.23. ~ 05.30.	6
	12	포르투갈 의회선거 참관	10.02. ~ 10.08.	6
	13	튀니지 총선 참관	10.02. ~ 10.08.	4

	14	우루과이 대통령선거 등 참관	10.23. ~ 10.31.	6
	15	미국 지방선거 참관	11.02. ~ 11.09.	6
	16	크로아티아 대통령선거 참관	12.19. ~ 12.24.	3
	17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선거 참관	12.20. ~ 12.24.	3
2020	1	뉴질랜드 총선·국민투표 온라인 참관	11.24. ~ 11.25.	8
	2	인도네시아 동시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온라인 참관	12.08. ~ 12.09.	6
2021	1	인도지방의회의원선거	04.05. ~ 04.06.	2
2022	1	인도 주의회의원선거 참관(온라인)	03.07.	2
	2	호주연방선거 참관(온라인)	07.18.	6
	3	오스트리아 대통령선거 참관	10.06. ~ 10.14.	4
	4	미국 중간선거 참관	11.05. ~ 11.11.	4
	5	슬로베니아 대통령선거 참관	10.20. ~ 10.26.	6
	6	네팔 하원 및 지방선거 참관	11.17. ~ 11.23.	3
2023	1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09.06. ~ 09.14.	4
	2	슬로바키아 국민의회의원선거 참관	09.25. ~ 10.02.	5
	3	폴란드 의회의원선거 참관	10.10. ~ 10.17.	5
	4	콜롬비아 지방선거 참관	10.25. ~ 11.01.	5

<2023년 외국선거 참관 주요일정>

구분	국가	대상선거	주요일정
1	몰디브 (4명, 9.6.-9.14.)	대통령선거 (9.9.)	· 투개표 선거과정 참관 · 몰디브 선거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2	슬로바키아 (5명, 9.25.-10.2.)	국민의회의원선거 (9.30.)	· 투개표 선거과정 참관 · 제20대 대선 前재외선거관위원회 면담
3	폴란드 (5명, 10.10.-10.17.)	의회의원선거 (10.15.)	· 투개표 선거과정 참관 · 선거 후보자 면담, 폴란드 주요 정당 방문
4	콜롬비아 (5명, 10.25.-11.1.)	지방선거 (10.29.)	· 투개표 선거과정 참관 · 콜롬비아 선거위원회 운영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 자료: 각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요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선거 참관국 선정 시 다양한 지역의 선거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선거를 실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륙별로 안배하여 결정하되, 방문국의 초청이 있거나 선거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함.
- 하지만, 2023년에 실시한 외국선거 참관 국외출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방문국 선정에 있어 유럽 2개국(슬로바키아, 폴란드), 미주 1개국(콜롬비아), 아시아 1개국(몰디브)으로 대륙별 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2023년에 선거를 치른 국가 중 방문지로 선정한 국가가 선거방식 연구에 적합한 국가인지는 의문임.
- 2023년에 선거를 치른 국가는 총 45개국으로, 유럽(19개국), 미주(10개국), 아시아(8개국), 아프리카(6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순으로 대통령선거부터 의회 선거, 지방 선거 등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방문국으로 선정한 일부 국가의 경우 다양한 선거제도를 비교·연구하는 데 있어 적절한 국가인지는 검토가 필요함.⁷⁴⁾

74) 특히, 몰디브의 경우 인구 39만명(2022년 기준)의 섬나라로 경기도 광주시 인구(2022년 기준 39만명)와 유사하고,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5%(2020년 기준)로, 카리브해의 네덜란드 식민지 아루바(Aruba)에 이어 세계 2위로서 주권국가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관광산업 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가 경제의 40%, 수출의 80%, 세입의 50%, 몰디브 관광업”, 비즈니스 인사이트(2022.11).

<2023년도 주요 외국 선거 일정>

대 록	연 번	국 가 명	선 거 명	일 정
유럽 (19개국)	1	체코	대통령 선거	01. 13.
	2	독일	베를린 주 의회 재선거	02. 14.
	3	에스토니아	의회 선거	03. 05.
	4	핀란드	의회 선거	04. 02.
	5	조지아	의회 선거, 시장선거	04. 29.
	6	알바니아	지방 선거	05. 14.
	7	독일	지방 선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브레멘시)	05. 14.
	8	그리스	의회 선거	05. 21.
	9	스페인	주 의회 선거 (아라곤주 등 12개 주)	05. 28.
	10	몬테네그로	의회 선거	06. 11.
	11	스페인	지방 선거 (아라곤주)	06. 25.
	12	아르메니아	예레반 원로회 선거	09. 17.
	13	슬로바키아	의회 선거	09. 30.
	14	독일	바이에른주, 헤센주 선거	10. 08.
	15	폴란드	의회 선거	10. 15.
	16	스위스	의회 선거	10. 22.
	17	몰도바	지방 선거	11. 05.
	18	스페인	총선	12. 10.
	19	세르비아	지방선거	12. 17.
미주 (10개국)	1	쿠바	의회 선거	03. 23.
	2	파라과이	총선 (대통령, 상·하원)	04. 30.
	3	캐나다	의회 선거 (알버타주)	05. 29.
	4	과테말라	총선 (대통령, 의회, 지방)	06. 25.
	5	캐나다	의회 선거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10. 02.
	6	미국	주지사 선거 (루이지애나주)	10. 04.
	7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10. 22.
	8	콜롬비아	지방 선거	10. 29.
	9	미국	중간선거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11. 07.
	10	칠레	국민투표	12. 17.
아시아 (8개국)	1	우즈베키스탄	국민투표	04. 30.
	2	태국	의회 선거 (하원)	05. 14.
	3	튀르키예	총선 (대통령, 의회)	05. 14.
	4	동티모르	의회 선거	05. 21.
	5	캄보디아	의회 선거	07. 23.
	6	싱가포르	대통령 선거	09. 01.
	7	몰디브	대통령 선거	09. 09.
	8	인도	주 의회 선거 (미조람주)	11. 07.
아프리카 (6개국)	1	나이지리아	총선 (대통령, 상·하원)	02. 25.
	2	수단	총선	07. 31.
	3	라이베리아	총선 (대통령, 하원)	10. 10.
	4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선거	11. 09.
	5	이집트	대통령선거	12. 10.
	6	콩고민주공화국	총선 (대통령, 의회 선거)	12. 20.
오세아니아 (2개국)	1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선거	03. 25.
	2	뉴질랜드	의회 선거 (하원)	10. 14.

※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둘째, 국외출장의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일정상으로도 방문국 간 일정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공통적으로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는 것 외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의 경우 선거 및 정당 관계자 면담, 前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면담, 교민 면담 등 관련 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지만, 몰디브 및 콜롬비아의 경우 선거참관 프로그램에 따른 일정 외에는 별도의 일정이 존재하지 않음.

<방문국 간 주요 일정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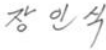
슬로바키아·폴란드·콜롬비아	몰디브, 콜롬비아
· 선거 및 정당재정관리위원회위원장 및 통계청장 면담(슬로바키아) · 주요 정당 방문, 교민 면담(폴란드)	· 선거위원회 운영 프로그램만 진행(몰디브) ·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만 진행(콜롬비아)

※ 자료: 각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요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참관 프로그램만 진행한 몰디브, 콜롬비아의 경우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몰디브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을 통한 초청, 콜롬비아의 경우 콜롬비아 선거위원회 초청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A-WEB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단체⁷⁵⁾로 우리나라가 사무처 유치국임.

75)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적 노력하에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이 참여하여 2013년에 설립한 단체로,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경험·정보 등을 공유하여 선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A-WEB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사무처 유치국으로 선정되어 2014년 4월 A-WEB 사무처가 출범(2014.4., 송도 G타워→2023.1. 송도 미추홀타워)하였음. A-WEB이 국제기구인지 여부와 관련해 A-WEB은 국내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나, 동 기관은 정부간 조약체결이나 국제기구 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국제기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몰디브와 콜롬비아 초청장>

몰디브 초청장	콜롬비아 초청장
 A-WEB Secretariat 1911, 19th Floor Michubol-Tower, 12 Gaetbeol-ro, Yeo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82-32-930-7200 www.aweb.org 26 April 2023 Dear Esteemed Members, I would first like to extend my warm greetings to you and all at your office.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Election Commission (EC) of the Republic of Maldives has invited A-WEB members to observe presidential election to be held on 9 September 2023 in the country. The invitation letter from the EC is enclosed for your reference. At request of the EC of Maldives, it's a pleasure and an honour to circulate to all EMB members an invitation of upcoming election of the Republic of Maldives. If your organization wishes to participate and observe the said elections, it would be deeply appreciated to submit applications to the EC of Maldives from the 25th of March, until the 25th of July 2023.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ith the EC of Maldives (email: info@elections.gov.mv). I wish you every continued success in all your noble undertakings. Sincerely,  Insik Jang Secretary General	  October 29th, 2023 Doctor SOOHWAN LE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lee@1987.go.kr Republic of Korea Subject: Invitation International Observation Mission - Territorial Elections 2023 - Colombia Respected doctor: Colombia's electoral organisation, made up of the National Electoral Council and the National Civil Registry, is in the process of organising International Electoral Observation Missions for the Territorial Elections 2023, which will be held on 29 October to elect governors, mayors, Departmental Assemblies, Municipal Councils and Local Administrative Boards. We therefore invite two (2) representatives of this electoral organisation to be part of the group of international observers. In this regard,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expenses corresponding to the accommodation, food and internal transport required for participation will be covered by us, as the organisers of the event. Unfortunately, on this occasion we are only able to finance the air ticket (economy class) for one (1) of the participants. The observers are due to arrive in the country on 25 October this year and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on 30 October. In order to make the necessary logistical arrangements, please confirm your participation no later than the eleventh (11th) of October of this year, by sending e-mail address observacioninternacional2023@cne.gov.co, attaching a copy of the passport of those who will be attending. We look forward to your valuable participation.  ALFONSO GARPO MARTÍNEZ Magistrado presidente Consejo Nacional Electoral  ALEXANDER VEGA ROCHA Registrador Nacional del Estado Civil Elecciones territoriales 2023

※ 자료: 각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제고하고, 방문국 및 방문일정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위원회운영(7132-351)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일비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양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임.

가. 개 요

- 위원회운영 사업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2억 5,700만원이며, 이 중 22억 1,800만원을 집행(98.3%)하고 3,900만 원을 불용하였음.

<위원회운영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257	2,257	-	-	-	2,257	2,218	-	39	1,76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위원수당 지급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에게 위원수당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수당 및 안전검토 수당으로 4,245만원, 중앙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위원수당 및 안전검토 수당으로 2억 7,090만원을 지급하였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각각 위원수당으로 1억 2,816만원 및 8억 3,154만원을 집행하였음.

<위원수당 및 안전검토수당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중앙위원회 위원장(1인)	중앙위원회 비상임위원(7인)	시·도위원회 위원(131인)	구사군 위원회 위원(1,953인)	계
위원수당	7,350	25,800	128,160	831,540	992,850
안전검토수당	35,100	245,100	-	-	280,200
계	42,450	270,900	128,160	831,540	1,273,0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일비액

으로 지급하고 있음.⁷⁶⁾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비용으로서, 회의 참석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인 회의참석 수당으로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비 상한액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임.⁷⁷⁾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일비액 >

구 분	2022년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000원	150,000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80,000원	120,000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60,000원	100,000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구분하지 않고 집행해왔으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는 별개의 개념인 만큼 추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 시 별표4의 해당 명칭을 ‘일비액’이 아닌 ‘지급액’으로 변경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76)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게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7) 참고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일비액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1일당 25,000원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일비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양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임.